

의안  
번호

19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육영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 제191호

다. 제출일자 : 2023. 09. 26.

라. 회부일자 : 2023. 10. 12.

### 2. 제안이유

-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다문화가족지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 추가(안 제4조)
- 다. 위원의 해촉 사항 추가(안 제13조)
-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기간 변경(안 제17조)
- 마.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9. 26. ~ 2023. 10. 01.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정서적 안정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는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인지<sup>2)</sup> 또는 귀화<sup>3)</sup>허가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귀화자”와 “인지 또는 귀화허가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까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2)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함.

#### 3) 귀화(歸)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말함. 귀화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하는 귀화로서 결혼 등에 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인데, 이를 좁은 뜻에서의 귀화라고 한다.

- 안 제4조(지원사업)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외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문화체험 및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을 추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안 제4조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사업)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지원 3.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의 평등을 위한 상담, 부부 및 부모교육, 가족 생활교육,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4. 다문화가족 내 폭력 등 가족해체의 위기 관련 보호 및 방지 지원 5.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사업) 1. ~ 5. (현행과 같음) <u>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u> <u>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u> <u>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u> <u>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u> 10. (현행 제6호와 같음)

- 안 제13조(위원의 해촉)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비밀누설 등을 추가하여 해촉 요건을 강화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 제13조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p> <p>2. 질병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p>	<p>1.~2. (현행과 같음)</p> <p>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p> <p>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p> <p>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p>

- 안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4) 및 지침에 따라 변경한 것이며, 현재 성북구 다문화지원센터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 제23조(실태조사 등)는 실태조사 조문을 삭제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4)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과약 및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상의 실태조사와 차별성이 없다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삭제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그 밖에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2호 조문 중 “결혼이민자 등”을 「다문화가족지원법」 5)과 일치하도록 “결혼이민자등”<sup>6)</sup>으로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01~102쪽)에 따른 “등”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차이점

의존명사인 “등” 띄어쓰기가 원칙이다. 그런데 “등”은 두 가지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뜻과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법령의 정의나 약칭에서 주로 쓰는 “등”은 두 번째 의미로 쓴 것이다. 그러나 법령문뿐만 아니라 일반 문장에서도 두 가지의 다른 “등”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에는 쓰는 “등”은 그것만으로 한정하는 “등”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안 제2조제2호 띄어쓰기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2. “ <u>결혼이민자 등</u>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u>결혼이민자등</u>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또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부칙을 수정해야 할 것임.

〈 부칙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